

2020년 경제분야 달라지는 지원제도

1 산업·경제분야(기존)

■ 일자리우수기업인증

- ※ 근거(시행일) :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('12. 11. 6.)
 · 소관부서 : 경제실(일자리경제정책과)

| 종 전 내 용 | 달라지는 내용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-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※기업지원금 : 3천만원(업체당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- 기업지원금 상향(3천만원 → 4천만원) |

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 상향

- ※ 근거(시행일) :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('19.11.29)
 · 소관부서 : 경제실(투자진흥과)

| 종 전 내 용 | 달라지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소재부품분야 제조업 : 현금지원한도 30% 이내 | · 소재부품장비분야 제조업 : 현금지원한도 40% 이내 |

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에 국민 경제기여도 추가

- ※ 근거(시행일) :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('19. 12. 10.)
 · 소관부서 : 경제실(투자진흥과)

| 종 전 내 용 | 달라지는 내용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자격 - 외투자분 30%이상 - 외투자금액 1억원이상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자격 - 좌동 - 좌동 - (추가)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|

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 입주 시 선정 심의 강화

- ※ 근거(시행일) :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('19. 12. 10.)
 · 소관부서 : 경제실(투자진흥과)

| 종 전 내 용 | 달라지는 내용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 결정 - 관리기관(시·도지사)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검토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여부 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 결정 - 좌동 - (추가) 입주희망기업이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 기준(예: 제조업 3천만불 등)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4만㎡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후 입주여부 결정 |

2020년 경제분야 달라지는 지원제도

2 산업·경제분야(신규)

■ 전통시장·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(시범)

- ※ 근거(시행일) :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('19. 7. 16.)
 · 소관부서 : 경제실(소상공인과)

| 종 전 내 용 | 달라지는 내용 |
|---------|--|
| < 신 규 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대상: 전통시장법 제2조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 * 노점 및 5일장 제외 ·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 가입 지원(도 30%, 시군 30%, 자부담 40%) - 화재 시 재물손해, 배상책임, 영업중단액, 풍수해 등 보상 |

3 보증 및 융자지원

■ 기본 금리인하

- ※ 근거(시행일) :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조치 반영('20. 1. 2.)
 · 소관부서 : 경제실(특화기업지원과)

| 종 전 내 용 | 달라지는 내용 |
|---------|---------|
| 3.0% | 2.85% |